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80호 2012. 3. 19.(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27호(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2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4

회							
람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3.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복합판매시설 등 입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425 (395)	광2-6	대2-44	일반도로	-	2001.5.8 (제2001-73호)	
변경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425 (395)	광2-6	대2-44	일반도로	-		일부폭원 변경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	-	·폭원: 변경없음 ·면적: 증 263.41㎡	926번지 일원의 교통개선 대책협의이행으로 일부구간확폭

나. 가구 및 획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96,466.05	감) 263.41	96,202.64	동춘동 926	48,286.25	감) 263.41	48,022.84	
2					동춘동 926-9	28,814.5	-	28,814.5	
3					동춘동 926-8	19,365.3	-	19,365.3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면적 감소 : 263.41㎡ · 획지면적 감소 : 263.41㎡	도로(중2-1호선) 면적 증가에 따른 대지면적 축소

다. 공개공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개공지	연수구 동춘동 926	11,039.08	감) 116.99	10,922.09	1994.12.3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개공지	· 면적변경(감 116.99㎡)	· 동춘동 926 일원의 교통개선대책협의 결과 이행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1	1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 색채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 도시경관 형 성 (단 강조색은 가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 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 자인 계획 - 옥외광고물 : 건물당 2개소 이하만 허용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각1개소), 적색계통 색상 금지 ·가로형간판 : 건물전면에 1개소만 허용 (가로크기 : 건물전면가로폭 길이의 1/3이하) ·지주이용간판 : 건물주출입구(보행전용) 에 1개소만 허용 (간판1면의면적 : 건물주출입구(보행전용)면적의 1/3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 색채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 도시경관 형 성 (단 강조색은 가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 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 자인 계획 - 옥외광고물 : 건물당 2개소 이하만 허용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각1개소) 삭제 ·가로형간판 : 건물전면에 1개소만 허용 (가로크기 : 건물전면가로폭 길이의 1/3이하) ·지주이용간판 : 건물주출입구(보행전용) 에 1개소만 허용 (간판1면의면적 : 건물주출입구(보행전용)면적의 1/3이하)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74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취지

-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명확화
 - 연수구 거주 ⇒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 이상
 - 내국인 ⇒ 내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 포함
- 지원사업 조정
 - 명예수당 지급액 3만원 ⇒ 8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 ⇒ 30만원(단, 65세 미만 지급 가능)
- 지급중지 조항 신설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환수 조항 수정
 - 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 및 환수방법 신설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4월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810-7282) 및 FAX(810-722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을 포함한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8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 30만원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신청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을 수당 지급일로 한다.

③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타 지역” 을 “타 시·군·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발취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05>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시비로 5만원을 보조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11-17>

③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시비로 20만원을 보조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3-29> <개정 2011-11-17>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10-03-29]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제3호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11-11-17]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7]